

#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 안 일자	회 부 일자	상 정 일자	의 결 일자	제안설명	비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9. 7.14	2009. 7.14	2009. 7.21	2009. 7.21	지역개발 과장	

## 2. 제안설명요지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24-1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3. 주요내용

- 사업명 : 충주 동촌컨트리클럽 (회원 18홀) 조성사업
- 위치 :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 24-1번지 일원
- 면적 : 1,066,799m<sup>2</sup>
  - 농림지역 693,578m<sup>2</sup>, 보전관리지역 356,509m<sup>2</sup>,
  - 계획관리지역 16,712m<sup>2</sup>
- 사업시행자 : 문성래저개발(주) 남승현
  - 주소)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5

○ 사업기간 : 착공 후 24개월

○ 총사업비 : 800억 원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 24-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18홀 규모의 충주동촌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농림 지역 693,578m<sup>2</sup>와 보전관리지역 356,509m<sup>2</sup>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 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골프장 조성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스포츠 레저 인구와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광객 증가와 지역민의 고용 증대, 세수 확대로 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 충주시는 교통망의 확충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으로 골프장 조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임페리얼레이크CC를 비롯한 6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고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골프장도 동촌골프장을 비롯하여 8개에 달하고 있음

-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 결과 관련 법규나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골프장 건설에 있어 최대 민원사항의 하나인 지하수 개발 관련 사항에 있어 대형관정의 개발 없이 광역상수도 및 남한강에서 취수하도록 계획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겠음. 그러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인근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형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예정지 뿐 아니라 가신리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 5. 질의답변 요지

- (1) 질의 :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진입로 주변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같이 바꿀 수 없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 이 건과 같이 추진할 수는 없음.  
다만, 향후 적성평가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음
- (2) 질의 : 남한강 물을 취수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취수하나?  
답변 : 양성 능암에서 취수함. 13km정도 떨어져 있음.

(3) 질의 : 골프장 부지내에 시유지가 있어 맞교환을 했는데,  
부지 교환 전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 검토하겠음.

그러나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면 사업부지 8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6. 심사결과

###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의견서 채택

붙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동촌골프장)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 의 견 서

□ 의안명 : 도시관리계획 변경(동촌골프장) 결정안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제1075호
- 상정일자 : 2009년 7월 21일
- 의결일자 : 2009년 7월 21일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 의 견

골프장 조성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 기반 시설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민의 고용증대 및 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어

동촌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 계획시설 결정)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골프장 조성공사에 앞서 사업예정지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 토양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2009. 7. 21.

충주시의회의장